

전주시 신축다세대 임대주택 입주자 선착순상시 모집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9.09.17(화)** 입니다.
- 금회 공급대상주택은 9.20(금)~9.21(토) 10:00~16:00에 세대내부를 개방하오니 입주신청자께서는 지정 시간에 주택을 보시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또한, **모집완료시까지 선착순 상시 모집**하며, 공급이 **완료되면 접수는 자동 종료**됩니다.
- 6개월 미공급 세대인 풍경빌(1-203), 평화드리움(1-501), 인후휴먼빌(1-401) 3호에 대해서는 단독세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제한도 없습니다.(4페이지 참조)**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중 주민등록등본은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내역**이 반드시 표시되어야하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급대상 주택

단지명	공급주택위치	전체호수	공급호수 (8호)
금암행복빌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1가 121-21 (모래내 6길 43)	8	1
풍경빌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7길 17-1 (효자동1가 161-17)	10	1
평화드리움	전주시 완산구 만내로 157-13,9 (평화동2가 600-3,13)	43	2
리버빌	전주시 덕진구 호반8길 26-3,7,9 (덕진동2가 6,5-1,5-8)	66	1
우아연립	전주시 덕진구 인교5길 17,19 (우아동1가 916-1,2)	40	2
인후휴먼빌	전주시 덕진구 인후6길 12 (인후동1가 226-226)	28	1

2. 임대기간 및 조건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내 용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2023년 ~ 2024년 예정)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주택명	공급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m²)			세대 수	대기 중인 예비자	모집 할 입주 자수	공가호수		임대보증금 (단위 : 천원)			최초입주
		공급 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용 면적	합계				동	호	계	계약금	잔금	
금암행복빌	59C	59.4800	18.5496	78.0296	1	0	1	1	402	66,991	6,600	60,391	'14.6월
풍경빌	56B	56.2500	13.6418	69.8918	2	1	1	1	203	51,618	5,100	46,518	'13.12월
평화드림	58A	58.6285	19.3669	77.9954	16	0	1	1	504	63,401	6,300	57,101	'13.10월
						0	1	1	501	63,401	6,300	57,101	
인후휴먼빌	57	57.8713	14.9312	72.8025	16	1	1	1	401	66,319	6,600	59,719	'14.09월
우아연립	55A	55.2131	17.8105	73.6011	4	0	1	101	503	70,981	7,000	63,981	'13.1월
	54	54.6538	17.1116	71.1160	4	0	1	102	405	57,787	5,700	52,087	
리버빌	56	56.0960	14.7467	70.8427	30	1	1	101	401	65,647	6,500	59,147	'14.6월

※ 상기 주택은 월임대료는 없으나, 임대주택 관리비(공용부분 청소 등)를 별도 부담하셔야 합니다.

※ 상기 주택은 승강기(엘리베이터)가 없으며 개별난방 방식입니다.

※ 위 임대보증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이며, 공급형이 동일하더라도 층·개별호수에 따라 임대보증금이 다를 수 있으며, 예비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주택은 기 준공된 주택으로 반드시 본인이 안내자료, 홈페이지 또는 공사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단지 또는 세대의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한 이사가 불가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금회 모집호수는 8세대이나 당첨자(입주자)의 미계약을 대비해 예비자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19.09.17)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월평균소득 130% 이하를 충족하는자 (단, 소득초과시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하며,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6개월 미공급 세대인 풍경빌(1-203), 평화드리움(1-501), 인후휴먼빌(1-401) 3호는 소득제한 없으며, 소득초과시에도 할증 미적용(최초 계약후 2년후 갱신계약시에는 소득초과시 할증 적용)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비고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 배우자') 포함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table><tr><td>외국인 배우자</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td><td rowspan="3">*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적상실자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하나(세대원 자격검증이 불가능하므로),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td></tr><tr><td>외국인 직계존·비속</td><td>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td></tr><tr><td>태아</td><td>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td></tr></table>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적상실자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하나(세대원 자격검증이 불가능하므로),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적상실자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하나(세대원 자격검증이 불가능하므로), 배우자가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거나, 외국인 등록을 신청한 후 등록 전인 경우에는 배우자를 세대구성원에서 제외하고 공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제외							

■ 소득기준

구분	소득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30%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 130%기준
	3인이하가구	7,022,358원 이하	6인 가구	9,553,558원 이하
	4인 가구	8,014,762원 이하	7인 가구	10,397,292원 이하
	5인 가구	8,709,824원 이하	8인 가구	11,241,025원 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 외국인은 신청 불가 합니다.
- ※ 해당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 단독세대는 신청할 수 없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음.
 - * 6개월 미공급 세대는 **단독세대도 신청 가능 : 풍경빌(1-203), 평화드리움(1-501), 인후휴먼빌(1-401)**
 - *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이 가능함. ④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소득초과자 임대보증금 할증 적용 기준(최초 신규계약시 월평균소득 100% 초과자는 2회차 이상 갱신계약 할증비율 적용)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00%) 초과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05%
10%초과 20%이하	105%	110%
2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120%	130%

* 단, 6개월 미공급 세대인 **풍경빌(1-203), 평화드리움(1-501), 인후휴먼빌(1-401)** 3호는 소득제한 없으며, 소득초과시에도 할증 미적용

4. 공급일정

■ 공급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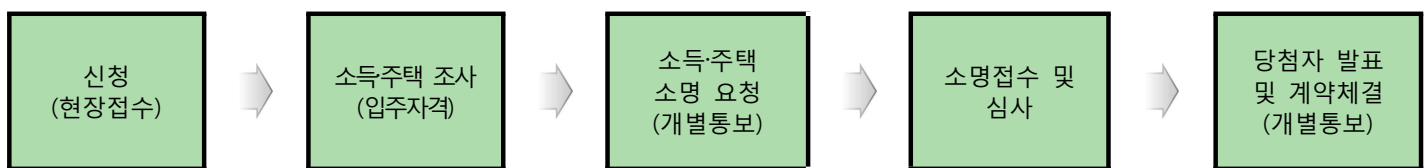
구분	주택개방일	신청접수(6층)	계약체결	장 소 (신청·접수)
전형별	9.20(금)~9.21(토) (10:00~16:00)	9.17(화) ~공급완료시까지 (09:00~18:00) ※ 현장접수만 가능 ※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자격심사 후 적격자 개별 통보 (접수일로부터 약 30일 소요 예상)	LH 전북지역본부 6층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 금회 공급대상주택은 위 시간에만 세대내부를 개방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는 현장접수만 가능함.
- 당첨자 발표는 당첨자선정 업무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입주자 선정(선착순)

- ※ 신청접수기간 중 접수 장소에 도착한 자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동·호 지정 접수하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접수기간 중 09:00 이전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신청접수 순서를 결정하며, 순서에 따라 동·호를 지정 접수합니다. (09시 이전 도착자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첨에서 제외)
- ※ 신청접수 시작 시각 이후에 온 신청자는 추첨을 하지 않고 접수장소에 도착한 순서대로 동호지정 접수합니다.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 받지 않습니다.)
- ※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인터넷 청약 불가)

■ 입주자 선정절차



- 해당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6.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입주자 모집공고일 (2019.09.17)이후 발행분]

제출서류	비 고	발급처	부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대상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만14세 미만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접수가 거부됨	LH공사	1통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주소변동내역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주민등록초본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1통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세대분리 된 경우(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제출	주민센터	1통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주민센터	1통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태아를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병원	1통

□ 기타 서류

- **본인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 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 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 자 신청 시** : (인감증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서

7. 당첨자 계약안내

■ 계약안내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계약금 입금증 (계약금 입금계좌번호 추후 안내 예정) • 계약자 도장 * 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 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공통서류 외에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시 월평균소득 100%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아래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계약시 월평균소득 100% 초과자는 아래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할증비율을 적용하고, 갱신계약시에도 월평균소득 100%초과시에는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할증비율 계속 적용함)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th><th>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th></tr><tr><td>10%이하</td><td>100%</td><td>105%</td></tr><tr><td>10%초과 20%이하</td><td>105%</td><td>110%</td></tr><tr><td>20%초과 30%이하</td><td>110%</td><td>120%</td></tr><tr><td>30%초과</td><td>120%</td><td>130%</td></tr></table>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05%	10%초과 20%이하	105%	110%	2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120%	130%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05%															
	10%초과 20%이하	105%	110%															
2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120%	130%																
	• 주거전용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공급신청자격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 신청 접수는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합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붙임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붙임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는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1순위)건강보험공단 (2순위)국민연금공단 (3순위)장애인고용공단 (4순위)국세청 ※ 공적자료 우선원칙에 의해 위 자료의 순위에 따라 1가지만 조회됨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주거복지사업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 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등급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 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 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 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적 경험내역 등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등급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전북지역본부 임대주택 콜센터 (☎ 063-230-6471~3) 전북지역본부 마이홈센터 (☎ 063-230-6162)
당첨자 ARS	1661-7700
인 터 넷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접수처 위치	LH 전북지역본부 본관 2층(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58)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위임장

(배우자 이외의 자가 신청시 작성)

(수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 수임인에게 신축다세대 임대주택 입주자등
(2019년 09월 17공고) 모집신청/접수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위임합니다.

2019년 월 일

- ※ 위임인 인감증명서 1통(본인발급분), 신분증(위임인, 수임인), 인감도장 지참
- ※ 위임장은 반드시 신청자가 자필로 작성

(위임인)

성명	(인감)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장